

2023 세법학 스터디가이드 10판1쇄 정오표

2023년 5월13일 현재까지 세법학에 필요한 오류사항과 개정사항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추가로 반영할 사항이 있으면, 학원 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	위치	수정전	수정후																																
69	◆2. 내용 5줄	◆2. ~ 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인지의 판단 기준일 ~	◆2. ~ 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인지의 판단 기준일 ~																																
106	5) ① 내용 3줄	① ~ 임대주택을 4년(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8년) 이상	① ~ 임대주택을 4년(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년) 이상																																
	5) ② 내용 2줄	② ~ 세액을 계산한 사업자가 해당 임대주택을 4년 이상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 세액을 계산한 사업자가 해당 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																																
113	2. 1) ③ ㉔ 내용	㉔ 양도일로부터 6개우러 이내에 연금계좌로 납입할 것	㉔ 양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연금계좌로 납입할 것																																
117	◆4. 내용 ① 6줄	① ~ 해당 금액은 매도인의 무조건 종합과세 기타소득이 된다.	① ~ 해당 금액은 매도인의 조건부 종합과세 기타소득이 된다. 따라서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198	◆2. 내용	◆2. 익금불산입률 개정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r> <th>출자비율</th> <th>익주</th> </tr> <tr> <td>50%</td> <td>100%</td> </tr> <tr> <td>20% 이상 50% 미만</td> <td>50%</td> </tr> <tr> <td>20% 미만</td> <td>30%</td> </tr> </table>	출자비율	익주	50%	100%	20% 이상 50% 미만	50%	20% 미만	30%	◆2. 익금불산입률 개정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r> <th>출자비율</th> <th>익주</th> </tr> <tr> <td>50% 이상</td> <td>100%</td> </tr> <tr> <td>20% 이상 50% 미만</td> <td>80%</td> </tr> <tr> <td>20% 미만</td> <td>30%</td> </tr> </table>	출자비율	익주	50% 이상	100%	20% 이상 50% 미만	80%	20% 미만	30%																
출자비율	익주																																		
50%	100%																																		
20% 이상 50% 미만	50%																																		
20% 미만	30%																																		
출자비율	익주																																		
50% 이상	100%																																		
20% 이상 50% 미만	80%																																		
20% 미만	30%																																		
200	3. 6) 내용	6)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	6)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 ◆4 ◆4. 취지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주주가 납입한 자본을 반환받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397	◆2. 내용 2줄	◆2. 취지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지배,통제권을 위탁자가 가지고 ~	◆2. 취지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지배,통제 권 을 위탁자가 가지고 ~																																
447	⑰ 내용	⑰ 매출에누리 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급가액에서 제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이를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공급하는 자가 해당 금액을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	⑰ 매출에누리 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아야 함 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해당 금액을 판매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으로 보고 이를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개정 ◆2																																
465	제3절 내용 1줄 제3절 박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를 목적으로 부가가치세의 23.7%에 해당하는 ~ 지방소비세=(부가가치세 납부세액-공제·감면세액+가산세)×23.7%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를 목적으로 부가가치세의 25.3% 에 해당하는 ~ 지방소비세=(부가가치세 납부세액-공제·감면세액+가산세)× 25.3%																																
491	(2) 3) 내용	3) 석유가스 중 부탄: kg당 275원. 다만, 2023년 4월 30일까지는 kg당 176.4원	3) 석유가스 중 부탄: kg당 275원. 다만, 2023년 8월 31일 까지는 kg당 176.4원																																
505	II 1. 표 (5)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r> <th rowspan="2">면세대상</th> <th colspan="4">면세 절차</th> <th rowspan="2">특례 사후제출</th> </tr> <tr> <th>승인신청 및 승인</th> <th>통지</th> <th>반입신고</th> <th>반입·용도 증명</th> </tr> <tr> <td>(5) 무조건 면세</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able>	면세대상	면세 절차				특례 사후제출	승인신청 및 승인	통지	반입신고	반입·용도 증명	(5) 무조건 면세	○	○	×	×	×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r> <th rowspan="2">면세대상</th> <th colspan="4">면세 절차</th> <th rowspan="2">특례 사후제출</th> </tr> <tr> <th>승인신청 및 승인</th> <th>통지</th> <th>반입신고</th> <th>반입·용도 증명</th> </tr> <tr> <td>(5) 무조건 면세</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able>	면세대상	면세 절차				특례 사후제출	승인신청 및 승인	통지	반입신고	반입·용도 증명	(5) 무조건 면세	○	×	×	×	×
면세대상	면세 절차				특례 사후제출																														
	승인신청 및 승인	통지	반입신고	반입·용도 증명																															
(5) 무조건 면세	○	○	×	×	×																														
면세대상	면세 절차				특례 사후제출																														
	승인신청 및 승인	통지	반입신고	반입·용도 증명																															
(5) 무조건 면세	○	×	×	×	×																														
508	2. 내용 2줄 III 1. (1) 내용 2줄	~ 따라서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반입증명서의 제출기한까지 멸실승인신청서 ~ ~ 해당 사실을 증명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할 때 에 ~	~ 따라서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용도 증명서의 제출기한까지 멸실승인신청서 ~ ~ 해당 사실을 증명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물품을 반출할 때 에 ~																																

510	I. 내용 2줄	~ 정부가 지정하는 장소에 특정한 과세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 함에 있어 개별소비세액을 ~	~ 정부가 지정하는 장소에 특정한 과세물품을 반출 함에 있어 개별소비세액을 ~						
	II. 내용 2줄	~ 판매할 목적으로 그 판매장에 반입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판매장에서 반출하는 다음의 물품 에 ~	~ 판매할 목적으로 그 판매장에 반입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다음의 물품 에 ~						
	III. 1. (1) 내용 2줄	~ 지정증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할 때 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 지정증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물품을 반출할 때 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514	2. ㉔ 추가	㉔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구입하는 것(300만원 한도)							
	(4) 1) 내용 1줄	반입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반입증명서는 해당 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한 날부터 3개월의 범위	반입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반입증명서는 해당 물품을 반출한 날부터 3개월의 범위						
518	III 2. 제목	2. 승인 및 통지	2. 승인서 발급						
	III 2. 내용	~ 면세승인 시 승인서를 발급하고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그 뜻을 통지해야 한다.	~ 면세승인 시 승인서를 발급 하여야 한다.						
521	II 3) 내용	3) 판매장 또는 제조장 으로부터 판매 또는 반출된 과세물품을 품질 불량 등의 사유로 같은 제조장 또는 하치장에 ~	3) 제조장 으로부터 반출된 과세물품을 품질 불량 등의 사유로 같은 제조장 또는 하치장에 ~						
551	◆2 내용 11줄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50%를 경감한다.						
554	세부사항 1. (2) 내용 6줄	(2) ~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득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의 매매 등의 가액 을 시가인정액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2) ~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득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및 신고·납부기한의 만료일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 중의 매매 등의 가액 을 시가인정액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560	◆1. ㉔ 내용 4줄	◆1. ㉔ ~ 부동산의 무상취득세율인 3.5%가 적용된다.	◆1. ㉔ ~ 부동산의 유상취득세율인 4% 가 적용된다.						
	◆3. ㉔ 내용 4줄	◆3. (원칙) 매매·교환·현물출자 등 유상취득	◆3. (원칙) 매매·교환·현물출자, 합병·분할 등 유상취득						
563	(4) 1) 내용	① 별장 내용 삭제							
565	◆1. 내용 10줄	◆1. ~ 취득한 후 3년(중전 주택 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 이하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	◆1. ~ 취득한 후 3년 이내 에 ~						
573	II 1. ㉔ 내용 3줄	② ~ 취득한 날부터 3년(중전 주택 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 내에 중전 주택 등을 처분하지 못하여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	② ~ 취득한 날부터 3년 내 에 중전 주택 등을 처분하지 못하여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						
	◆2 ㉔ 내용	⑤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및 고급선박 취득	⑤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및 고급선박 취득						
575	IV 3) 내용	3) 별장, 고급오락장 등 중과세대상~	3) 고급오락장 등 중과세대상~						
589	VI. 1. 표	구 분	표준세율	구 분	표준세율				
		주택	별장(부속토지 포함) 4% 1세대 1주택(시가표준액 9억 이하) 0.05%~0.35% 4단계 초과누진세율 위 외의 주택(부속토지 포함) 0.1%~0.4% 4단계 초과누진세율	주택 1세대 1주택(시가표준액 9억 이하) 0.05%~0.35% 4단계 초과누진세율 위 외의 주택(부속토지 포함) 0.1%~0.4% 4단계 초과누진세율					
591	6. 내용 추가	하단 별첨							
633	3. (1) 내용 3줄	~ 우수 인력 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연구기관 등에 취업하여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5년간 소득세의 일정액을 감면한다.	~ 우수 인력 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연구기관 등에 취업하여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0년 간 소득세의 일정액을 감면한다.						
636	(3) 1) 표	구 분	공제율 개정			구 분	공제율 개정		
			중소기업	중견기업	일반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일반기업
		③ 국가전략기술의 ~	25%	15%	15%	③ 국가전략기술의 ~	16%	8%	8%
651	(2) ㉔ 내용 2줄	② ~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중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에 대 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 일 것	② ~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중사하고 증여일부터 3년 이내 에 대 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 일 것						
652	(6) 1) ① 내용	①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에 대표이사로 중사하지 아니한 경우	①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의 기간 중에 대표이사로 중사하지 아니한 경우						
	(6) 2) ㉔ 박스	$\text{징수 또는 납부 세액} = \text{납부유예받은 세액} \times \frac{\text{감소한 지분율}}{\text{상속개시일 현재 지분율}}$	$\text{징수 또는 납부 세액} = \text{납부유예받은 세액} \times \frac{\text{감소한 지분율}}{\text{증여일 현재 지분율}}$						

6. 1세대 1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1) 개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의 재산세액(해당 재산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함께 부과하는 지방세를 포함)의 납부유예를 그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1

(2) 납부유예 적용 대상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납세의무자는 납부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다.

- 1)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인 주택 한정)의 소유자일 것
- 2)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 3)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할 것
 - 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 ②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한다)
- 4) 해당 연도의 납부유예 대상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것
- 5) 지방세, 국세 체납이 없을 것

(3) 신청 및 허가

1) 납부유예 신청

납세의무자는 납부유예를 그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유예를 신청한 납세의무자는 그 유예할 주택 재산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납부유예 허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유예 신청을 받은 경우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납세의무자에게 납부유예 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4) 허가의 취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 재산세의 납부가 유예된 납세의무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하고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납부를 유예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 ①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 ②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 ③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④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 **취지** 현금유동성이 부족한 60세 이상 고령 및 5년 이상 장기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납부유예를 통하여 완화시켜주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

- ⑤ 「지방세징수법」상 납부기한 전 징수사유에 해당되어 그 납부유예와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⑥ 납부유예된 세액을 납부하려는 경우

(5)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유예를 허가한 날부터 (4)에 따라 징수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